핵심상품설명서

1. 기본 정보

펀드명	DBI 크레딧 리바이벌 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위험도	2등급(높은위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고난도 펀드	**미해당**		
펀드 종류	투자신탁 /특별자산형 /폐쇄형 /단위형 /사모형/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전문투자자	최소투자금액	전문투자자:해당사항없음 집합투자기구:3억원이상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1개월	레버리지(차입 등) 한도	200%
판매일정	、 15시30분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5시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일정	、15시30분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15시30분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5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결산 및 이익분배	• 회계기간: 최초설정일부터 이후 매 1년 단위 결산(임의결산 가능) • 이익분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은 회계기간 종료일 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수익증권으로 분배		
투자소득의 과세	•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수익 중 과세대상 수익은 신탁기간 종료일, 이익분배금 지급일, 환매일에 원천징수함		
자산운용회사	• DBI자산운용(주) • 연락처 : 02-6925-5556 • www.dbiasset.com	판매회사	한양증권
수탁회사	미래에셋증권(PBS)	사무관리회사	한국펀드서비스
원금손실발생여부	이 집합투자증권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판단시 핵심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부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3.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핵심설 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위험등급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 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핵심상품설명서는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은 성과보수를 지급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투자신탁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는 운용수익률에 연동하여 해지시점에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운용성과가 좋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게 되므로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지시점에 성과보수가 일괄적으로 부과되어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해지에 따른 성과보수 부과로 인해 투자자가 예상한 수익률 보다 낮은 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10.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집합투자업자가 공정가치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자산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한 공정가치가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자한 자산의 처분이 지연되어 투자신탁 계약기간 내에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투자신탁의 상환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은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시장상황에 따라 국내 주식 및 채권 등을 투자하나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일반 사모집합투 자기구로서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또는 특정 자산이나 전략의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단일 전략을 수행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합 투자기구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

	용이 발생하여 투자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분쟁발생 시 당사 준법감사인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표번호 02-6925-5556). 또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상품의 내용

가.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개인회생채권(IRL) 및 신용회복채권(CCRS)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외에도 상기 개인회생채권 및 신용회복채권을 담보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수익권 증서를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수익자는 신용대출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 및 신용회복채권은 채무자의 부도, 채무불이행, 파산, 신용등급 하락의 발생에 따른 채무불이행위험과 시중실세금리의 등락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투자전략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자산에 대해 단기운용 및 중도매각, 운용기간 연장 같은 전략 등을 사용한다.

1. 개인회생채권(Individual Rehabilitation Loan)
: 개인회생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3년 내지5년간 일정한 금액을 상환 받는 채권으로 채무자의 상환의지가 높음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

2. 신용회복채권(Credit Counseling & Recovery Service)
: 이자율조정, 변제기 유예 등 최장8년의 분할약정을 통한 채무부담 경감으로 채무자의 상환의지가 높음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
.
□ (투자대상 취득한도)
①이 투자신탁은 법 제229조 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의100분의50 이상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하며,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되는 투자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회생채권(Individual Rehabilitation Loan)
: 채무자가 변제계획서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에 대해 법원이 이해관계인과 법률관계를 조정확정해준 개인 무담보 부실채권

2. 신용회복채권(Credit Counseling & Recovery Service)
: 개인신용회복채권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개인 부실채권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여신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채무의 일정부분을 하향 조정한 개인 무담보 부실채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4.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제안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4.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 산정 방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3.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1. 집합투자업자는 제23조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산정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2.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1좌를1원으로 하여1,000좌당1,000원으로 한다.
3. 제1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 및 비용은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한다.

3. 투자위험

위험등급	본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사 위험등급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높은 위험)’이고 당사 위험등급은 '고위험'이며 해당 위험등급은 금융상

	품의 구조, 원금손실 가능범위, 기초자산, 가치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본 금융투자상품은 매우 높은 레버리지, 복잡한 손익구조, 낮은 유동성, 매우 높은 손실발생 위험, 투자부적격 신용등급 등으로 인해 투자 시 금융상품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금융지식 수준, 이해도 및 주의가 필요한 상품으로, 투자자성향이 공격투자형인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며, 부적합한 고객에게는 회사가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투자원본 손실위험	본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원본을보장하지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고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인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따라예금보험공사가보호하지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본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금전채권신탁 수익권증서에투자함으로써 담보대상채권의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변화에 따라급격히 변동될 수 있고, 이 경우 투자원금의 전부및일부 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권리 변경 및 시장변동에 따른 위험	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움직이는 경우 제시하는수익구조및권리내용에따라수익이'0 (零)' 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 자산의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지거나 투자대상 자산의 권리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투자대상 자산이 발행 시의 투자대상 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기타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매매활동이 어려워지는 등의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투자신탁에서 제시하는 수익률은 예상 목표수익률에 불과하므로 이 수익률 혹은 운용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동성/ 만기연장 위험	본 투자신탁은 폐쇄형으로 투자신탁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환매청구를 할 수 없어 투자기간 동안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기초자산의 만기와 펀드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적시에 상환할 수 없는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투자대상 자산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공모주 등의 경우 일반적인 주식종목에 투자하는 다른 투자신탁보다 더 큰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 가치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펀드 만기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상황, 정부조치, 세제 등 제도변화, 자산관련 및 시장관련 변화 등에 따라 환매가 연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환매 관련 위험	본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며, 환매청구 시 기준가격 적용일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따라서 투자결정 시 환매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매 연기 위험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합니다.)는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본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수익자의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한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해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아울러 채권의 이자와 원금 등에 대한 회수완료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일반적으로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 가격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 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	본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은 제한된 수의 개인회생채권(IRL) 및 신용회복채권(CCRS)에 집중되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투자 포트폴리오보다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 업종 또는 섹터의 위험에 노출되어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해외투자 시 이익 및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과세 제도 변경 위험	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한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세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관련 법령 및 제도 구체화 과정에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기간 동안 발생된 손익에 대한 과세 범위 및 과세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시 기존 비과세 되던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을 포함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써 과세될 수 있으며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손익 통산을 허용하는 등 기존 과세 체계와 비교하여 여러 방면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성과보수 지급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는 운용수익률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운용성과가 클 수록 더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기대하는 성과보다 낮은 수준의 투자성과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투명성위험	본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사모투자신탁으로 공모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의 투명성을 가진 펀드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동 투자신탁의 가격변동의 사유 또는 이상변동 등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지하지 못한 추가적인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인지하지	본 리스크 분석은 작성 당시 파악된 위험요소를 최대한 반영 및 분석하였으나, 발

못한 위험	생 가능한 모든 위험이 기재된 것은 아니며, 향후 운용과정에서 분석 시점에 인지하지 못한 위험요인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이 투자신탁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거래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펀드 비용(수수료・보수)

Ⅰ. 펀드보수

가입자격	전문투자자	
보수 (연, %)	총 보수	0.30%
	운용	0.08%
	신탁	0.10%
	판매	0.10%
	일반사무관리	0.02%
선취수수료	없음	

Ⅰ. 성과보수

① 이 투자신탁은 제31조의 투자신탁 보수와 별도로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취득한다.

② 성과보수는 수익자 계좌별·판매사별로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계산되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판매회사로부터 수취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성과보수는 수익자 계좌별로 각 매입건별로 그 수익증권 보유기간의 성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성과보수계산기간

가.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한 후 첫 회계기간 말일에 도달하는 경우, 수익자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기간 말일까지

나. 가목에 따른 회계기간 이후 회계기간 말일에 도달하는 경우, 회계기간 초일부터 매 회계기간 말일까지

다.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회계기간 초일부터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 다만, 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환매하는 경우,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

2. 성과보수 금액 및 계산방법

가. 성과보수금액 : Max[초과수익금액 (1) x 성과보수율 (2) , 0]. 다만, 제 1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 Max[Σ(각 매입건별 초과수익금액 (1) X 성과보수율 (2) , 0].

나. 계산방법

(1) 초과수익금액	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의 투자신탁 평가액[3]– Hurdle금액[4]
(2) 성과보수율	7 %
(3) 성과보수 계산시간 말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① 이익분배금 지급시(전부 해지, 상환금지급일 포함) : 성과보수 계산일 현재의 보유좌수 X 성과보수 계산일 현재의1좌당 기준가격 ② 일부 환매시: 투자신탁 환매좌수X 1좌당 환매기준가격

(4) Hurdle 금액	①High Water Mark 평가액[5]X (1+Hurdle rate[6]) ②해당 회계연도 안에 수익자 계좌별로 당해 수익증권이 여러 번 취득된 경우 각각의 매입건(결산 후 재투자금액 포함) 별로 High Water Mark 평가액과 Hurdle rate를 계산하여 각각의 Hurdle 금액을 구한다.
(5) High Water Mark 평가액	①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 취득가액[7] ②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Max[취득가액, 당해 및 이전 각 회계연도 초일 투자신탁 평가액[8]]. 다만, 당해 및 이전 각 회계연도 초일 이후에 수익증권의 취득이 추가로 있었던 경우에는 Max[취득가액, 당해 및 이전 각 회계연도 초일 투자신탁 평가액[8]]과 추가로 취득된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환매 청구시 ① 또는 ②에 따른 매입건별로 High Water Mark 평가액 X 해당 매입건의 환매좌수/해당 매입건의 환매전 총좌수
(6) Hurdle rate	8 % X (성과보수계산기간의 일수/365)
(7) 취득가액	매입좌수 X 1좌당 매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8) 회계연도 초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해당일 현재 좌수(해당일 재투자좌수 포함) X 해당일에 적용되는 1좌당 기준가격

성과보수 한도 : 집합투자업자는 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의 투자신탁 평가액에서 제2호에 따라 성과보수를 차감한 금액이 투자원금(취득가액과 재투자금액을 포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성과보수를 취득한다. 다만, 이미 취득한 성과보수는 환급하지 않는다.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계산된 성과보수를 다음 각 호에 정한 날에 취득한다.

이익분배금 지급일. 다만, 당해 이익분배금 보다 성과보수가 클 경우 이익분배금 범위 내에서 성과보수를 취득한다.

수익증권의 일부환매일.

수익증권의 전부환매일.

운용사 변경에 따라 성과보수 계산시 보유중인 잔고에 대해서는 변경일의 기준가를 최초 매수 기준가로 본다.

이 투자신탁은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더욱이 성과보수를 성과보수 인출시점에 계산하여 인출하므로 투자자는 기준가격으로 예상한 운용성과 보다 미달하는 성과를 실현할 수 있다.

대표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정현종	1964.07.22	대표이사	트러스타자산운용 대체투자부문 대표 (사모펀드4개 설립, AUM 301.3억원 운용) 메이슨캐피탈 대표이사 (신기술금융 펀드5개 설립, AUM 1,053억원 운용) 한국증권금융 자산운용부문장 (유가증권/대체투자6조1,054억원 투자 총괄, PEF/VC 총 47개 펀드5,965억원 투자) 홍콩 삼성자산운용(Asia) CEO&CIO (ChinaFund등3천억원 펀드 운용)

			삼성생명 해외투자/전략투자 수석운용역, 신탁운용부장(국내외 증권/대체투자10조6,500억원 운용, 신탁펀드2,800억원 운용)

5. 환매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환매기준 및 환매방법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폐쇄형으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의3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업자는 위 사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변경에 이의가 있는 수익자는 개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이익분배	-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으로 지급 받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성과보수와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재투자) -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0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 판매회사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 행위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1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5년 이내 범위의 기간 내에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판매회사는 해지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